

노인인권

1. 노인권리보호

-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
-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

2.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

- ① 수급자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격려한다.
- ② 수급자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,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.
- ③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시키고,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수급자 가족 등에게 노인학대 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한다.
- ⑤ 노인학대 정황 및 의심 발견 시 즉시 신고
: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



본 포스터는 Goodwinus 자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학대노인

우리는 지킴이!

알기 쉬운 노인학대 유형



신체적 학대

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예)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


정서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예) 소외시키거나 말·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.



성적 학대
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예)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.



경제적 학대

노인의 의사에 반(反)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예)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.



방임

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예)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


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예)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



노인학대 신고·상담전화



노인보호전문기관

1577-1389

24시간

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.